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1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상욱·서미화

최수진 · 김소희 · 박덕흠

이종배 · 김대식 · 송석준
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,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.9세이며,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.5세, 지적장애인은 57.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.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. 이를 감안할 때,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그 기간이짧은 문제가 있음.

참고로,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연금을 감액 없이 4년 빠르게 지급하고 있으며, 미국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'사회보장 장애보험' 제도가 있음.

이에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

제61조 등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중 "60세(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)가"를 "60세가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.

- 1. 특수직종근로자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함)

제62조제1항 중 "특수직종근로자는"을 각각 "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 증장애인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특수직종근로자는"을 "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"으로 한다.

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특수직종근로자는"을 "특수직종 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,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노령연금 수급권자) ① 가	제61조(노령연금 수급권자) ①
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	
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	
는 60세(특수직종근로자는 55	<u>60세가</u>
<u>세)가</u>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	
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.	
<단서 신설>	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자는 55세가 된
	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
	<u> 령연금을 지급한다.</u>
<u><신 설></u>	1. 특수직종근로자
<u><신 설></u>	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
	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
	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
	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
	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사람(이하 "중증장
	<u>애인"이라 함)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2조(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)	제62조(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)
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	①
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	
미만인 사람(특수직종근로자는	특수직종근로자

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) 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(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)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(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)가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(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.이하이 조에서 같다)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한다.이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따라조정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63조의2(소득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) 제61조에 따른 노령연 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

또는 중증장애인은
<u>특수직종근</u>
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
②
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
<u>장애인은</u>
③·④ (현행과 같음) 163조의2(소득활동에 따른 노령
1103소의A(소극활동에 따는 도명 연금액)
진 다 뛰/

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(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)인 기간에는 제62조 제2항ㆍ제4항, 제63조 및 제66 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(부 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~ 5. (생 략)

-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
<u>애인은</u>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